

국유림 [] 대부
[] 사용허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5일		
신청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·성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전화번호		
신청사항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m ²	신청면적 m ²
	용도		대부·사용 구분 [] 유상 [] 무상		
	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	비고		

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의 []대부 []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, 국립수목원장
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
지방산림청장, 국립산림과학원장

첨부서류	1. 연차별 사업계획서(사업의 목적 및 기간,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도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1부. 다만,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가.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: 임도설계도서나,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: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. 토사유출방지계획서(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4.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·등록·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.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, 제13조,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(산지전용·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)을 첨부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	→	대부계약·사용허가 여부 통지
신청인		처 리 기 관		처 리 기 관		처 리 기 관
* 처리기관: 제주특별자치도, 국립수목원, 산림항공본부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, 지방산림청, 국립산림과학원						